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499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8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18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8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8. 25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·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
○ 계 직제폐지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안 제2조 위치를 산 57번지로 한 사유는

● 답 : 사무소 위치가 산 57번지 이기때문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8. 25 출석위원 전원 참석으로 원안가결